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281
----------	------

제출일자 : 2016. 8.

제 출 자 : 달성군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역진흥을 위한 연구·컨설팅, 지역축제·관광홍보, 특산품 마케팅 지원, 마을경제 및 공동체 지원사업 등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출연으로 설립한 재단으로, 그동안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원되었던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1항제2항에 의거 조례로 제정하여 재단의 운영과 지자체 지원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지원범위(안 제1조~제2조)
- 나.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출연금 지급 방법(안 제3조~제4조)
- 다. 결산서 제출(안 제5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 나. 예산조치 : 연 7,500,000원 예산 편성 예정

다.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4) 규제심사 : 원안 동의
- (5)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6. 7. 22. ~ 8. 11.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6) 비용추계서 : 생략(「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제1호에 의거)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3조(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① 제2조에 따른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재단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예산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출연금의 지급) ① 재단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재단에 지급한다.

제5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